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38

발의연월일: 2022. 1. 25.

발 의 자:정희용・지성호・김용판

金炳旭・조명희・최춘식

한무경 · 김석기 · 서일준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8년에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를 경우 인구 유입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 역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 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14의"를 "20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다"를 "하되, 자치구·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조건을"을 "조건 및 지역대표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 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 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 · 도별 지역구시 · 도의원 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 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 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 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 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 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 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 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 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 그 밖 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 -----20의----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 · 시 · 군의 지역구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 -----하되, 자치구 로 한다. ·시·군에 읍·면·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 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 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 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 定) ① -----

擧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
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
地勢・交通 그 밖의 <u>조건을</u> 고
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
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
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
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
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
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
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
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
와 같이 한다.

② ~ ④ (생 략)

<u>표성을</u>
 ② ~ ④ (현행과 같음)